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 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동시가입 처리를 위한 ID 부여하고자 함

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정보를 지원사항 민원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4. 29. ~ 6.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미심의

총리령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제대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군복무 기간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군인연금 수급여부	여[] / 부[]			
지원사항	《보훈·보상·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지원* []교육지원(본인,자녀)*		※홈페이지(V-net) 회원(ID:)	
	[]보철구 지급*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취·창업상담 및 알선	
	(*별도 신청) []법률구조지원* []주택 우선공급*		[]직업교육훈련(전문교육,사이버,직업훈련비)*	
	[]각종 대부지원*[]공공시설의 이용		[]전직지원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병적증명서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방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군인연금, 전직기본교육, 직업교육훈련, 진로목표 등)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